

'93年度 國有財産 賣却計劃

河 用 鎬 / 山林廳 管理課長

1. 緒 言

山林廳은 國有林을 擴大하고 造林·育林·林道·休養林施設을 擴充하는등 國有林을 經濟的 公益的資源으로 가꾸는데 必要한 財源을 마련하면서 土地實需要者를 위한 土地供給機能도 함께 遂行하기 위하여 山林廳所管 國有財産中 特別히 保存할 必要가 없는 財産을 處分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特別히 林業에 關心을 가지신분들께서 木材加工施設등을 위한 工場敷地를 마련하거나 經濟林地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등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는 한편 國有林野管理特別會計의 歲入擴大에 積極的인 協助를 얻기 위하여 國有財産處分制度和함께 今年度賣却計劃을 簡單히 紹介하고자 합니다.

國有林野管理特別會計의 歲入財源은 주로 土地賣却代, 賃貸料, 林木賣却代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중 土地賣却代가 그 大宗을 이루고 있는 實情으로서 93年度의 경우 國特會計 全體豫算 1,726億원중 土地賣却代歲入豫算이 1,534億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歲入財源은 國有林擴大등 財産管理에 489億원, 造林·育林·休養林造成등 國有林經營에 510億원, 林道施設등 林業基盤造成에 334億원이 投入되는등 모든

豫算이 國有林의 經濟的·公益的價値를 造成시키는데 값지게 投入되고 있습니다.

특히 現在 山林事業에 投資되는 一般會計豫算이 國特會計豫算의 69%水準인 1,195億원에 不過한 實情으로서 그동안 國有林野管理特別會計는 우리나라 山林行政을 活性化시키는데 決定的인 寄與를 해왔을뿐 아니라 앞으로도 一般會計에 크게 期待하기 어려운 現實與件을 考慮할때 더욱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國特會計豫算의 擴大와 이를 뒷받침할 雜種不用財産의 賣却은 앞으로 山林行政의 成敗와 直結된다고 할 만큼 重要한 일입니다마는 最近 不動產景氣의 沈滯에 따라 國特會計歲入의 不振이 深刻한 實情입니다.

그동안 國特會計의 歲入이 週期的으로 起伏을 이루어 온점으로 미루어보아 最近의 歲入不振現狀도 一時的인 沈滯狀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歲入이 不振할때에 總力的으로 打開策을 謀索하여 山林行政의 停滯를 防止하는 일은 우리 임업계 전체가 걱정해야할 重要한 當面課題가 아닐수 없습니다.

2. 賣却對象財産과 基準

國有林野管理特別會計 所管財産은 全國

에 林野 1,237천 ha, 林野以外の 土地 4,579 ha가 있으나 모든財産을 制限없이 處分하는 것은 아닙니다. 林野의 경우는 國有林 擴大圈域(國有林의 效率的 擴大集團化를 위하여 國有林 密集地域을 中心으로 設定한 圈域)内の 林野는 處分하지 않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므로 擴大圈域 밖에있는 財産中 不要存國有林(雜種財産)만을 賣却하게되며 一般土地의 경우는 擴大圈域 内外를 不問하고 雜種財産은 모두 賣却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경우에나 貸付등 私權이 設定되지 않은 財産이라야 하며 또한 國家에서 現在 使用하지 않고있고 앞으로도 特別히 使用할 計劃이 없는 財産이라야 합니다.

國有財産을 賣却하는 方法에는 隨意契約으로 賣却하는 경우와 公開競爭入札의 方法으로 賣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隨意契約으로 賣却할수 있는경우는 特別히 法令으로 定한 경우로서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山林法 第80條에 의하여 隨意契約으로 賣却할수 있는 경우는

(가) 80年 6月 30日 以前 貸付地로서 貸付目的이 達成된 財産, 다만 山林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性質의 土地(牧畜用貸付地등)는 特別한 制限없이 賣却할 수 있으나 순수한 林野인 경우는 國有林擴大圈域 外에 位置한 財産(造林用貸付地나 造林貸付後 分收林으로 轉換된 貸付地 등)이라야 합니다.

(나) 公用, 또는 公共용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한 財産

(다)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에 賣却하는 경우등 입니다.

둘째로 위의 山林地 以外에 國有財産法

第12條에 의한 國有財産管理計劃에 의하여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는경우도 있는데 重要한것만을 들어보면

(가) 81年 4月 30日 以前부터 占有使用하고 있는 建物無斷占有地 다만, 建物바닥面積의 2배範圍内에서 賣却하게되며 市地域에서는 1,000㎡, 其他地域에서는 2,000㎡ 以下라야 합니다.

(나) 81年 4月 30日 以前부터 占用중인 宗教用地

(다) 都市計劃法에 의한 公用·公共用地나 再開發事業用地

(라)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에 의한 工業團地 開發用地

(마) 宅地開發促進法 第26條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内 土地

(바)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32條 및 第33條에 의한 開墾地 및 開墾對象地

(사) 農村近代化促進法 第165條에 의한 農地改良用地

(아) 輸出自由地域設置法 第7條에 의한 自由地域内 企業用地

(자)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其他 公共團體가 公用·公共用, 또는 直接 事務用 등으로 使用하고자하는 土地

(차) 學校法人의 學校用地나 寄宿舍用地,

(카) 市以外地域에 位置한 10,000㎡ 以外の 絶對農地나 農業振興地域内 農地

(타)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한 工場立地内 工場敷地面積의 20% 未滿인 土地 등 입니다.

한편 隨意契約으로 賣却하지 못하는 雜種財産으로서 特別히 法令으로 處分 制限을 하지않는 國有財産은 公開競爭入札의 方法으로 賣却하게 되나 다음과 같이 地域別로 面積의 制限을 받게됩니다.

구분	임야	토지
특·직할시	20,000㎡未滿	3,000㎡未滿
일반시	50,000 "	5,000 "
기타지역	100,000 "	10,000 "

3. 節次와 方法

國有財産을 買收하고자 할경우 그 節次와 方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隨意契約으로 買收할수있는 要件을 갖추는경우에는 管轄營林署의 管理所나 特·直轄市의 區廳에 對象土地를 指定하여 買收要請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管理所나 區廳에서는 隨意契約으로 處分할수 있는 要件을 갖추었는지與否를 確認한후 國有財産管理計劃에 反映하여 山林廳에 承認要請을 하게되고 管理計劃 承認節次를 거친후 鑑定機關의 鑑定評價를 받아 賣却하게 됩니다.

둘째 公開競争入札에 參加하여 買收하고자 할 경우에는 買收하고자하는 國有財産을 索出하여 國有財産管理計劃에 反映해 주도록 要請하거나 管轄管理所 또는 特·直轄市의 區廳에서 公賣公告한 賣却對象財産目錄 內容을 確認한후 必要한 財産을 指定하여 入札에 參加하면 됩니다.

4. 맺는말

리우環境會談 以後 最近 4個月동안에 導入木材價格이 80%까지 上昇하였다는 報道는 木材의 87%를 外材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커다란 衝激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것은 벌채의 확대로 내재수요를 스스

로 충족하면서 한편으로 자연 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모순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對備하기 위하여는 木材資源의 劃期的인 經營이 이루어져야 하나 林野의 大部分(71%)을 차지하는 私有林이 劣惡한 經營與件 때문에 放置狀態에 있는 實情으로 앞으로의 內材供給은 거의 大部分을 國有林에 依存할수 밖에 없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木材의 自給을 위하여 그리고 山林의 公益機能 增進을 위하여 國有林의 擴大와 資源增殖을 서두르지 않을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수있는 國有林管理特別會計의 歲入擴大問題는 더욱 時急한 課題가 아닐수 없습니다.

항상 먼 앞날을 생각하면서 採算이나 功名을 떠나 山과 林業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오신 林業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當面하고있는 이러한 課題들을 타결하는데 다시한번 앞장서 주실것을 呼訴함과 아울러

끝으로 임업인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가 꾸어오신 조림대부지(확대권역외)나 목축용 대부지등 장기대부지를 최대한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고 또한 國有재산관리계획으로 규정한 수의계약대상재산이나 '93년도 國有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公매대상 國有재산이 임업인들을 위한 事業용지로서 최대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지면관계상 매각대상 재산의 목록을 게재하지 못하오니 필요하실 경우 산림청 관리과(961-2422, 2423) 또는 해당 영림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